

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997년 5월
기획총무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
 및제안자 : 1997년 4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5월 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66회 서구의회(임시회) 회기중
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7년 5월 21일 상정의결)

2. 제 안 설 명 의 요 지

<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윤대우>

가. 제안사유

- '95. 3. 1일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화정2동 관할 주월동 지번을 화정동으로 정정 민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고
- 동장의 직급과 직무 및 동사무소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이 별도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 바로잡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「별표」중 화정2동 관할구역란의 “주월동 관할 번지중 주월1동, 주월2동 관할지역을 제외한 전지역”을 “933~1607, 산187~산225”로 개정하고
-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박종근)

-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'96.11.20 제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승인요구한 내용으로
- '97. 3. 26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정2동 관내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것이며
- 해당부서에서는 행정구역 실무요령에 의한 자체세부추진계획을 세워 각종 공부정리와 주민홍보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.
- 제3조를 제2조로 하고, [별표]중 화정2동 관할구역란의 “주월동 관할
번지중 주월1동, 주월2동 관할지역을 제외한 전지역”을 “933~1607”,
“산187~산22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별표」 행정운영동의 명칭,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

신 · 구조 문 대 비 표

현			개 정 안		
행정운영 동 명	동장	관할구역(관할 법정동)	행정운영 동 명	동장	관할구역(관할 법정동)
양 1 동		(생 략)	양 1 동		(현행과 같음)
양 2 동		"	양 2 동		"
양 3 동		"	양 3 동		"
농성 1동		"	농성 1동		"
농성 2동		"	농성 2동		"
광 천 동		"	광 천 동		"
유 덕 동		"	유 덕 동		"
상무 1동		"	상무 1동		"
상무 2동		"	상무 2동		"
화정 1동		"	화정 1동		"
화정 2동	1	315, 829 주월동 관할번지 중 주월 1동, 주월2동 관할지역을 제외한 전지역	화정 2동	1	(현행과 같음) 933 ~ 1607, 산 187 ~ 산 225
화정 3동		(생 략)	화정 3동		(현행과 같음)
화정 4동		"	화정 4동		"
서 창 동		"	서 창 동		"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동장) ①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며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</p> <p>②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</p> <p>제3조 (행정운영동의명칭,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) 행정운영동의명칭,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. (개정 '89. 12. 21, '94. 7. 1)</p> <p>제4조(하부조직)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칙으로 한다.</p>	<p>삭제</p> <p>제2조 (행정운영동의명칭,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) ----- ----- ----- (-----)</p> <p>삭제</p>